

	경영책임 사규	문서번호	KDIC-AA-0300
		제정일자	1977. 07. 01
	이 사회 규정	개정일자	2022. 02. 28
		개정번호	14
		페이지	1 / 9

제·개정 이력

No	일 자	주요 제·개정 내용	비고(제·개정사유)
1	1977.07.01		
2	1989.01.01		
3	1998.08.11		
4	1999.02.27		
5	2002.03.08	감사위원회 신설	
6	2009.03.11	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	
7	2010.02.22	임원 호칭 일부 변경(상무보 신설)	
8	2012.03.23	감사위원회 제도를 상근감사제도로 변경 및 상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	
9	2013.12.19	개정(환경경영시스템 인증관련 내용 추가)	
10	2015.03.20	의장 규정 변경	
11	2016.03.25	의장 규정 변경	
12	2017.04.01	분할 후 변경사항 반영	
13	2022.01.01	내부회계 감사 시행에 따른 보고사항 추가	
14	2022.02.28	ESG 평가 권장사항 반영	



목 차

1. 목적	3
2. 적용범위	3
3. 권한	3
4. 구성	3
5. 의장	3
6. 종류	3
7. 소집권자	3
8. 소집절차	3
9. 결의방법	4
10. 부의사항	4
11. 경영위원회	6
12. 관계인의 출석	6
13.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	6
14. 외부 전문인력 지원	6
15. 의사록	7
16. 간사	7



제 1조 목적

이 규정은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적용범위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조 권한

- (1)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(2)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 4조 구성

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내이사, 사외이사,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제 5조 의장

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고,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(주)경동인베스트의 정관이 정하는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6조 종류

- (1)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(2)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초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은 별도의 협의에 의한다.
- (3)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7조 소집권자

- (1)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(2)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조 소집절차

- (1)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 전에 이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.



- (2)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조 결의방법

- (1)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,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 및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.
- (2)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 또는 동시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(3)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(4)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0조 부의사항

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(1) 부의안건

(가)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1) 주주총회의 소집
- 2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3) 재무제표의 승인
- 4) 정관의 변경
- 5) 자본의 감소
- 6) 회사의 해산, 합병, 회사의 계속
- 7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
- 8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9) 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10)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
- 11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- 12) 주식배당 결정
- 13)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
- 14) 이사의 보수
- 15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- 16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(나) 경영에 관한 사항

- 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2)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
- 3)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
- 4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5) 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, 상무보의 선임 및 해임
- 6) 공동대표의 결정
- 7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8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
- 9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단,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.
- 10)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
- 11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12)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
- 13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규정 및 개폐
- 14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

(다) 재무에 관한 사항

- 1) 투자에 관한 사항
- 2) 중요한 계약의 체결
- 3)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
- 4) 결손의 처분
- 5)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- 6) 신주의 발행
- 7) 사채의 모집
- 8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9) 전환사채의 발행
- 10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11)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
- 12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
(라) 이사에 관한 사항

- 1)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
- 2) 타회사의 임원 겸임

(마) 기타

- 1) 주요한 소송의 제기
- 2) 감사인의 선임
- 3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(2) 보고사항

- 1)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
- 2)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사항
- 3)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
- 4)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 11조 경영위원회

- (1)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(2)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(3)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의 경우에는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.
- (4)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(5)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12조 관계인의 출석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3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

- (1)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(2)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 14조 외부 전문인력 지원

- (1) 사외이사가 필요 시 외부 전문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

제 15조 의사록

- (1)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(2)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- (3)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.

제 16조 간사

- (1)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(2) 간사는 담당 부서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